

1 이 참고 자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참고 자료는 범칙사건의 항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자료는 항소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일 뿐, 범칙사건의 항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칙사건의 항소 절차를 명시한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의 규칙 8.900-8.929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rules에서 제공합니다.

다른 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경범죄 항소 절차에 관한 정보**
(양식 CR-131-INFO)
- **소액 민사 사건(Limited Civil Cases)의 항소 절차에 관한 정보**(양식 APP-101-INFO)

이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제공합니다.

2 범칙사건이란 무엇입니까?

범칙사건이란 벌금, 교통 학교, 또는 일부 형태의 지역 사회 봉사에 처해질 수 있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형법 섹션 17, 19.6 및 19.8 참조. 이러한 법들의 사본은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xhtml>에서 제공합니다.) 범칙사건의 예로는 티켓이 발부될 수 있는 많은 교통 위반 사건 또는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는 일부 시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범죄로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이 아니라 경범죄입니다.

- **실질적 증거 없음:** 항소인은 항소부에 대해 항소하는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부는 검토 과정에서 결정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항소부는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은 증거 또는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인이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여부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부는 이러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항소한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을 뒤집지 않습니다.

3 항소란 무엇입니까?

항소는 상급 법원에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범칙사건의 경우, 항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상급 법원의 항소부이며, 하급 법원(이 정보 시트에서 “1심 법원”이라 함)이 상급 법원입니다.

항소는 새로운 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항소부는 새로운 증인의 증언이나 새로운 증거물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항소부의 임무는 사건에 법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심 법원에서 발생한 일과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4 항소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범칙사건의 항소심은 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소는 복잡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항소심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온라인 셀프 헬프 센터(California Courts Online Self-Help Center)(www.courts.ca.gov/selfhelp-lowcosthelp.htm)에서 변호사 찾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오심(prejudicial error):** 항소하는 당사자 (“항소인”이라 함)는 재판에서 항소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법적 오류 또는 재판 절차상 오류(이를 “불리한 오심”이라 함)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항소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오심에는 법에 관한 판사의 실수, 또는 항소인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의 실수나 위법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항소부는 항소한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이 옳다고 추정합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과 오류가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항소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항소인의 책임입니다.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표지에 귀하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사용 가능한 경우) 및 이메일 주소(사용 가능한 경우)를 기재해야 하며, 이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5 누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1심 법원 재판의 당사자만 그 사건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 배우자, 자녀, 친척을 대리해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는 당사자를 항소인이라고 합니다. 범칙사건에서 항소인은 일반적으로 범칙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합니다. 범칙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은 일반적으로 형사 기소를 한 정부 기관입니다(법원 문서에서는 이 당사자를 캘리포니아 주민(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이라고 합니다).

6 1심 법원이 내린 모든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심 법원의 종국 판결, 즉 사건 전체에 대해 최종 단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종국 판결에는 법원이 부과한 형벌이 포함됩니다. 종국 판결에 앞서 1심 법원이 내린 그 밖의 결정은 별도로 항소할 수 없으며,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의 일부로 나중에 검토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범칙사건의 경우, 범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유죄 판결 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또는 기타 처벌)에 대해 항소합니다. 범칙사건에서 당사자는 판결 후 항소인의 실제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1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섹션 1466(2)(B)). 이 법의 사본은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xhtml>에서 제공합니다.)

7 항소를 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항소장(notice of appeal)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해당 사건의 상대방과 1심 법원에 귀하가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항소장 및 항소 기록(범칙사건)(양식 CR-142)을 사용하여 범칙사건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CR-142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forms.htm에서 제공합니다.

8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있습니까?

예. 범칙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이 귀하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선고") 후 또는 귀하가 항소하려는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심 법원의 판결 날짜는 일반적으로 1심 법원이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에게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하거나 다른 처벌을 명령하는(귀하에게 선고하는) 날짜입니다. **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 항소부는 귀하의 항소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

9 항소장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범칙사건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귀하가 범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법원의 서기에게 항소장 원본을 건네주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추가 사본을 지참하거나 서기에게 우편으로 보낸 후 서기에게 원본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스탬프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사건에서 항소장 제출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항소장 제출에 다른 요건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원의 서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항소장을 제출하면 서기는 항소장 사본을 검사 사무실(예: 지방 검사, 카운티 변호사, 시 검사 또는 주 검찰총장)에 보낼 것입니다.

10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처벌을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까?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벌금 납부나 기타 형 집행 완료 기한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연기하려면 법원에 판결의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를 원하는 경우 먼저 법원에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부에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1심 법원에 유예를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항소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서 밝혀야 합니다.

벌금 납부나 기타 형 집행은 1심 법원이나 항소부가 유예를 허가하지 않는 한 연기되지 않습니다. 유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명령한 날짜까지 벌금을 내지 않거나 형의 다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되거나 민사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벌금에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1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습니까?

예. 항소장을 제출할 때, 귀하는 (1) 1심 재판의 통상적인 기록(normal record on appeal)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관해 피항소인과 합의했는지 (“약정”), 그리고 (2) 1심 법원에서 진술한 사항의 기록(이것을 “구두 심리” 기록이라고 함)을 항소부로 보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원한다면 어떤 형식의 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1심 법원에 말해야 합니다. 항소장 및 1심에 관한 기록(Record on Appeal) (범칙 사건)(CR-142 양식)에는 이 기록을 제공할지 여부와 어떻게 제공할지를 해당 법원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체크 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항소부는 어떤 경우에 구두 심리 기록이 필요합니까?

귀하는 항소부에 1심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의 기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려는 쟁점이 항소부가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쟁점인 경우, 항소부는 이러한 구두 심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항소 중인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소부는 구두 심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항소부 판사는 1심 법원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의 공식 기록을 작성하여 항소 법원에 보내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록의 형식에 따라 구두 심리의 공식 기록을 작성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귀하가 빈곤하지 않은 경우), 기록의 최초 초안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심 법원에서의 구두 심리 기록이 작성되지 않으며 항소부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항소부는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심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3 해당 기록의 다른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심 법원에서 구두 심리 기록을 작성하여 범칙사건의 항소부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1심 절차 요약서(statement on appeal)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심 절차가 공식적, 전자적으로 녹음된 경우, 1심 법원은 녹음으로부터 작성된 녹취록을 가질 수 있으며, 또는 해당 법원에 이를 허용하는 현지 규칙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정”), 녹취록 대신 공식 전자 녹음 자체를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속기사가 참석했다면, 속기사는 “속기록(reporter’s transcript)”이라는 기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1심 절차 요약서

설명: 1심 절차 요약서란 1심 법원의 심리를 요약한 후 1심 법원의 심리를 진행한 1심 판사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판사”에는 라는 용어에는 위원 및 임시 판사가 포함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심 법원 절차가 법원 속기사 또는 공식 전자 녹음 장비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러한 형식의 기록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1심 절차 요약서를 1심 법원의 구두 심리 기록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법원의 속기록 또는 전자 녹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1심 절차 요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내용: 1심 절차 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항소인)가 항소에서 주장하는 요점에 대한 진술
- 1심 법원의 결정 및 판결 요약

-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과 관련된 각각의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증거의 요약

(1심 절차 요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작성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규칙 8.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의 사본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rules에서 제공합니다.)

항소 이유서(Proposed Statement) 작성: 1심 절차 요약서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항소이유서(범칙사건)(양식 CR-143)을 사용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R-143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제공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송달 및 제출: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송달/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및 제출”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항소이유서를 검사와 기타 당사자에게 우편 송부, 교부, 전자적으로 발송(“송달”)하게 할 것.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경우, 이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따라서 귀하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검사가 귀하의 사건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었다는 기록을 남길 것. 이 기록을 “송달 증명서”라고 합니다. 송달 증명서(항소부)(양식 APP-109) 또는 전자 송달 증명서(항소부)(양식 APP-109E)를 이용해 송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서에는 항소이유서를 송달한 사람,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사람, 항소이유서를 송달한 방법(우편 송달, 직접 송달, 또는 전자 송달), 항소이유서를 송달한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의 원본과 송달 증명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할 것.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록 보존을 위해 제출하려는 항소이유서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본을 제출할 때 항소이유서의 추가 사본을 지참하거나 서기에게 우편으로 보낸 후 서기에게 원본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스탬프를 이 사본에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서류의 송달 방법 및 송달 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송달 증명서란 무엇입니까?(양식 APP-109-INFO) 및 캘리포니아주 법원 온라인 셀프 헬프 센터(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 검사와 기타 당사자는 귀하가 항소이유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항소이유서에 대한 변경 제안서(“수정제안서”라고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귀하의 항소이유서, 검사 및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수정제안서를 모두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관련 증언 및 기타 증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소이유서를 정정 또는 수정하거나 귀하에게 정정 또는 수정을 명령합니다.

완료 및 인증: 판사가 항소이유서를 정정 또는 수정하거나 귀하에게 이를 정정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검토를 위해 정정/수정된 항소이유서를 귀하, 검사, 다른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판사가 정정/수정한 항소이유서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정/수정된 항소이유서가 귀하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서를 송달/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의서를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수정함으로써, 항소이유서가 관련 증언 및 기타 증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한 것임을 인증합니다.

해당 이유서의 항소부 송부: 판사가 항소이유서를 인증하면, 법원 서기가 서기의 기록(clerk's transcript)과 함께 이를 항소부에 보냅니다.

b. 공식 전자 녹음, 또는 공식 녹음의 녹취록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일부 범칙사건에서 1심 법원의 심리는 승인된 전자 녹음 장비에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귀하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녹음된 경우, 귀하는 심리 절차의 공식 전자 녹음으로부터 녹취록을 작성하여 항소부에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기에 앞서 귀하의 사건이 공식적, 전자적으로 녹음되었는지 여부를 1심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에는 1심 절차 요약서 또는 일부 구두 심리의 녹취록만으로 항소하는 쟁점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기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한 현지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그러한 현지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원에 항소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지 규칙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정”), 녹취록을 작성하는 대신 공식 전자 녹음의 사본 자체를 이러한 구두 절차의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기에 앞서, 귀하의 사건이 공식적, 전자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1심 법원에 확인해야 하며, 녹음 자체의 사용을 허용하는 현지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귀하는 항소장에 구두 절차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한 합의서 사본(“약정”이라고 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비용: 일반적으로 항소인은 녹취록 작성 또는 공식 전자 녹음의 사본 작성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녹취록 또는 전자 녹음 사본의 예상 비용을 귀하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녹취록이나 녹음을 여전히 원하는 경우, 이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귀하는 1심 절차 요약서를 사용하거나 규칙 8.917에 열거된 다른 조치들 중 하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빈곤한 경우(녹취록 또는 전자 녹음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녹취록 또는 공식 전자 녹음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사 선임, 상환, 1심 재판 기록에 공적 경비를 이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재정 문서(양식 CR-105)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귀하가 빈곤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CR-105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양식을 검토하여 귀하가 빈곤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빈곤하고, 귀하의 사건에 대한 공식 전자 녹음이 이루어졌으며, 귀하가 녹취록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무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녹취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 중에 항소하는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귀하의 사건에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귀하가 녹취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원은 귀하에게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으며, 1심 절차 요약서 또는

구두 심리 중 일부에 대한 녹취록만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쟁점을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가 빈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이를 통지할 것이며, 귀하는 이를 대신하여 1심 절차 요약서를 이용하거나 규칙 8.917에 나열된 다른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작성 및 인도: 귀하가 녹취록 또는 공식 전자 녹음의 예상 비용을 서기에게 예치하거나, 법원에 대해 귀하가 빈곤하고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서기가 녹취록 또는 녹음의 사본을 준비할 것입니다. 녹취록이 작성되거나 공식 전자녹음 사본이 준비되면 서기는 서기의 기록과 함께 녹취록 또는 녹음을 항소부로 송부합니다.

c. 속기록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일부 범칙사건의 경우 법원 속기사가 1심 법원의 심리에 참석하여 구두 절차를 기록합니다. 법원 속기사가 귀하의 사건을 기록했다면, 법원 속기사에게 “속기록(reporter’s transcript)”이라고 하는 구두 심리의 녹취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기에 앞서 법원 속기사가 귀하의 사건을 기록했는지 여부를 1심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에는 1심 절차 요약서 또는 일부 구두 심리의 녹취록만으로 항소하는 쟁점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기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한 현지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그러한 현지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일반적으로 항소인은 속기록 작성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 속기사는 1심 법원의 서기에게 속기록 작성의 예상 비용을 제공할 것이며, 서기는 이 견적서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속기사의 속기록 작성을 원하는 경우, 귀하는 서기가 귀하에게 예상 금액을 송부한 후 10일 이내에 예상 금액을 예치하거나 규칙 8.919에서 허용하는 대체 수단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 8.919에 따라 귀하는 속기록을 이용해 심리를 진행하는 대신 다른 형식의 기록을 사용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빈곤한 경우(속기록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속기록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사 선임, 상환, 1심 재판 기록에 공적 경비를 이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재정 문서(양식 CR-105)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귀하가 빈곤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CR-105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양식을 검토하여 귀하가 빈곤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빈곤하고, 속기사가 귀하의 사건을 기록했으며, 귀하가 녹취록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무료 속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녹취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 중에 항소하는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귀하의 사건에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귀하가 속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원은 귀하에게 항소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으며, 1심 절차 요약서 또는 구두 심리 중 일부에 대한 녹취록만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쟁점을 검토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가 빈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이를 통지할 것이며, 귀하는 다른 형식의 기록을 선택하거나 규칙 8.919에 나열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작성 및 인도: 귀하가 속기록의 예상 비용을 서기에게 예치하거나 규칙 8.919에서 허용하는 대체 수단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귀하가 빈곤하며 녹취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기는 속기사에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속기사가 속기록을 완성하면 서기는 속기록과 서기의 기록을 모두 항소부로 송부합니다.

14 항소부로 보내야 하는 다른 부분의 기록이 있습니까?

예. 항소부에 보내야 하는 공식 기록에는 서로 다른 두 부분이 있습니다.

- **1심 법원에 제출된 서류:** 1심 법원 서기는 귀하의 사건에서 제출된 서면 문서의 기록(“서기의 기록”이라 함)을 작성하여 항소부에 보내야 합니다. (서기가 이 기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서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의 규칙 8.912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사본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rules에서 제공합니다.)
- **심리 중에 제출된 증거물:**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었거나 거부되었거나 제출되었던(임시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사진이나 지도와 같은 증거물은 1심에 관한 기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항소부의 증거물 검토를 원하는 경우, 귀하는 항소부에 피항소인의 마지막 준비서면(the last respondent’s brief)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심 법원 서기에게 증거물 원본을 항소부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의 규칙 8.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의 사본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rules에서 제공합니다.)

때때로 1심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 증거물을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1심 법원이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증거물을 반환하였고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가 그 증거물을 항소부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 증거물을 가진 당사자는 최대한 빨리 그 증거물을 항소부에 인도해야 합니다.

15 기록이 준비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두 심리 기록이 준비되는 즉시 1심 법원의 서기는 서기의 기록과 함께 이를 항소부에 송부합니다. 항소부서가 이 기록을 수령하면 항소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16 준비서면(brief)은 무엇입니까?

준비서면은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적용되는 법률, 항소하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하는 서면입니다. 귀하가 항소에서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의 준비서면을 작성할 것입니다. 항소에서 변호사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의 규칙 8.927-8.928을 읽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준비서면의 형식 및 길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해 범칙사건의 항소에서 준비서면을 작성, 송달, 제출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rules에서 제공합니다.

내용: 귀하가 항소인(항소하는 당사자)인 경우 귀하의 최초 준비서면(“항소인의 최초 준비서면(appellant’s opening brief)”이라 함)에서 1심 법원의 법적 오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준비서면은 서기의 기록 및 1심 절차 요약서(또는 기타 구두 심리 기록) 내에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위치를 언급해야 합니다. 항소는 새로운 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소부는 새로운 증인의 증언이나 새로운 증거물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지 않으므로, 준비서면에 새로운 증거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송달 및 제출: 귀하는 법원이 통지한 기한까지 항소부에 귀하의 준비서면을 송달/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해당 기록이 항소부에 제출된 후 30일입니다. **항소부가 정한 기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및 제출”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준비서면을 피항소인(기소 기관) 및 기타 당사자에게 우편 송부, 교부, 전자적으로 발송(“송달”)하게 할 것. 준비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경우, 이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따라서 귀하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합니다.
-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는 기록을 남길 것. 이 기록을 “송달 증명서”라고 합니다. 송달 증명서(항소부)(양식 APP-109) 또는 전자 송달 증명서(항소부)(양식 APP-109E)를 이용해 송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송달 증명서에는 준비서면을 송달한 사람,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사람, 준비서면을 송달한 방법(우편 송달, 직접 송달, 또는 전자 송달), 준비서면을 송달한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준비서면의 원본과 송달 증명서를 항소부에 제출할 것.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록 보존을 위해 제출하려는 준비서면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본을 제출할 때 준비서면의 추가 사본을 지참하거나 서기에게 우편으로 보낸 후 서기에게 원본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스탬프를 이 사본에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서류의 송달 방법 및 송달 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송달 증명서란 무엇입니까?\(양식 APP-109-INFO\)](http://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 및 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준비서면을 송달/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피항소인(기소 기관)은 피항소인의 준비서면을 송달/제출함으로써 답변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항소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록, 항소인의 준비서면, 그리고 항소인의 구두 주장을 근거로 항소에 대해 판단합니다.

피항소인이 준비서면을 송달/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피항소인의 준비서면이 송달된 후 20일 이내에 피항소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답변하는 또 다른 준비서면을 송달/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답변 준비서면(reply brief)”이라고 합니다.

18 모든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준비서면이 송달/제출되거나 송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법원은 귀하의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 날짜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19 구두 변론이란 무엇입니까?

“구두 변론”이란 양 당사자가 항소부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구두 변론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항소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구두 변론을 포기하는 경우, 판사는 제출된 준비서면 및 기록을 근거로 귀하의 항소에 관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 당사자는 구두 변론을 포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항소부는 포기하지 않은 당사자와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구두 변론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변론 시간은 최대 5분입니다. 판사는 이미 준비서면을 읽었으므로 귀하는 판사 앞에서 준비서면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항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사에게 말하거나, 귀하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지 판사에게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20 구두 변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두 변론이 열린 후(또는 모든 당사자가 구두 변론을 포기하는 경우 구두 변론 예정일이 지난 후) 항소부 판사는 귀하의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항소부는 구두 변론 예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은 법원 서기가 우편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21 항소를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소를 계속 진행하고 싶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항소 포기(이것을 “취하”라고 함) 의사를 알리는 서면을 항소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포기(범칙사건) 양식(CR-145 양식)을 사용하여 범칙사건에서 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R-145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제공합니다.

항소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유죄 판결, 선고된 형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항소 중에 형이 유예된 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된 후 즉시 형의 이행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